

의안번호	2208967
의 퇴 인	박충권의원
회 답 일	2025. 6. 5.
추계번호	25B1582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 (경력단절 예방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하여야 함(제1항) 1.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·운영 지원사업 2.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3. 자녀의 출산·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4. 여성과학기술인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·사회 문화 개선사업 5.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,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2 (경력단절 예방 지원)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□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실시(안 제13조의2제1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(이하 “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”)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,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¹⁾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법 시행령²⁾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‘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제 확대,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등’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활성화, 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, 생애주기 단계별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1) 법 제13조의2(경력단절 예방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시행령 제16조의2(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)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지원 사업
2.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
3. 여성과학기술인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·사회 문화 개선사업
4.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표 1]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사업내용	예산(2025년)
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(R&D) (1744-402)	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활성화 지원	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&D 경력복귀 지원, 경력복귀 여성창업가 발굴 등	7,170
	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	과학기술분야 기관의 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 단축 등 대체인력 활용 지원	8,270
	생애주기 단계별 이공계 여성 멘토링	경력복귀 및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취업탐색 및 글로벌 멘토링	5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,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향후 실시될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